

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9년 11월 24일

○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26일

3. 제안이유

○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의·자문기능을 가진 “지역혁신협의회”가 폐지되고

※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공포(09. 10. 9)

○ 동일 기능의 “지역발전협의회”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의거 신설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쉬운 법률 용어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○ 지역균형발전시책 심의·자문 기관(제4조 제4항) 및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대행 기관(제14조 제1항) 명칭 변경
(지역혁신협의회 ⇒ 지역발전협의회)

○ 알기쉬운 법률용어(어문규정 준수, 용어 순화, 한글화)를 위한 일부 조문 개정
(정의는 ⇒ 뜻은, 이라 함은 ⇒ 이란, 의한 ⇒ 따른 등)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○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변경 및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